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월이용료
-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600원	1,151,600	643,7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 시간별)

방문요양 :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니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원

-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가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
-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0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한다.
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